재해사망 특약 약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가족형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읍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2 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에서는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배우자형에서는 제 2항 제 1호에 정한 자로, 가족형에서는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에 정한 자(이하 "배우자형, 가족형의 피보험자"를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제 1조 제 1항에서 선택한 형에 따라 본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관계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2. 주피보험자의 만 22 세 이하 미혼 자녀

제 3 조 (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 2 조 제 2 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특약의 체결후 제 2 조 제 2 항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보험금 지급 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조건에 따라 별표 2에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이하"재해"라 합니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또는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 宣告)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2. 보험기간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상의 1 급 장해(이하 "고도의 장해(高度의 障害)" 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고도의 장해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 상태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배우자형 또는 가족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제 1 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 1조 제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고도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고도의 장해 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고도의 장해 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1 항 제 2 호와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 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연금개시전, 재 1보험기간, 만 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확정연금 최종 지급일 등)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읍니다.
그러나 제 1조 제 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계산방법에 따라 제 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년도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를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게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재출하는 서류

제 10 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 9 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제 7 조, 제 11 조 제 2항, 제 12 조 제 1 항)에는 해약환급금은 없읍니다.

제 11 조 (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읍니다. 다만 청약시에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구 분	피보험자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본 인 형	본 인	재해 사망 및 고도의 장해시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배우자형	배 우 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가 족 형	배 우 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60 %
	자 녀(1인당)		계약보험가입금액의 40 %